

제11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 요약서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 관 부 서	소 관 위 원 회
1	성남시주민투표 조례안	☐ 제안이유 · 2004년 1월 29일 주민투표법이 제정·공포됨에 따라 · 주민투표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중심으로 조례를 제정코자 함 ☐ 주요골자 · 일정자격을 갖춘 20세이상 외국인에게 주민투표권 부여(안 제3조) · 주민투표의 대상(안 제4조) - 구·동의명칭 및 구역변경, 폐치분합, 사무소변경에 관한사항 - 행정동의 구역변경과 폐치·분합 -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사항 - 기금의설치, 지방채발행, 민간투자사업실시에 관한사항 - 다른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- 기타 주민의 복리·안전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· 투표청구 주민수(안 제5조) -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/15 · 서명기간(안 제7조, 제11조) - 서명요청기간 : 대표자증명서 교부사실의 공표가 있는 날부터 90일 - 서명보정기간 : 10일 이내 · 주민투표청구심의회설치운영(안 제12조) · 투표운동의 제한(안 제14조) - 야간 호별방문 : 오후8시부터 다음날 오전8시까지 금지 - 야간 옥외집회 ▶ 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·토론회 →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금지 ▶ 공개장소에서의 연설·대담에서 휴대용확성기만 사용 →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	자치행정과	자치행정

제11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요약서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 관 부 서	소 관 위원회																				
2	성남시호적과태료 부과정수조례폐지 조례안	☐ 제안이유 · 호적법시행규칙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, 조례에 따로 정할 필요가 없어 폐지코자 함. ☐ 주요골자 “동조례를 폐지함”	자치행정과	자치행정																				
3	성남시시세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	☐ 제안이유 ·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만 얻은 소규모 협동화사업자도 세제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감면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☐ 주요골자 ·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은 중소기업의 협동화사업자가 최초로 취득하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%감면 조건 중 사업단지 조성승인 의무조항을 삭제함 (안 제12조제2항)	세 정 과	경제환경																				
4	2003회 계 년 도 세입 · 세출결산 승인안	☐ 제안이유 · 성남시 세입 · 세출예산에 대한 2003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거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☐ 주요골자 단위 : 백만원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>회 계 별</th><th>예산현액</th><th>세입결산액</th><th>세출결산액</th><th>세계잉여금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계</td><td>1,437,385</td><td>1,516,807</td><td>740,097</td><td>776,710</td></tr> <tr> <td>일반회계</td><td>887,696</td><td>943,931</td><td>609,686</td><td>334,245</td></tr> <tr> <td>특별회계</td><td>549,689</td><td>572,876</td><td>130,411</td><td>442,465</td></tr> </tbody> </table>	회 계 별	예산현액	세입결산액	세출결산액	세계잉여금	계	1,437,385	1,516,807	740,097	776,710	일반회계	887,696	943,931	609,686	334,245	특별회계	549,689	572,876	130,411	442,465	회 계 과	각상임위
회 계 별	예산현액	세입결산액	세출결산액	세계잉여금																				
계	1,437,385	1,516,807	740,097	776,710																				
일반회계	887,696	943,931	609,686	334,245																				
특별회계	549,689	572,876	130,411	442,465																				

제11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 요약서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관부서	소 관 위원회
5	성남문화재단정관 안에대한동의안	□ 제안이유 · 성남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공포됨에 따라, 재단운영에 필요한 정관안을 작성하여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함. □ 주요골자 · 재단의 명칭을 “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”으로 하며 영문으로는 “Seongnam Cultural Foundation”으로 함 (안 제2조) · 재단의 사업범위를 정함(안 제4조) · 재단은 매년도 사업실적 및 세입·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3월내에 시장 및 의회에 제출토록 함(안 제13조) · 임원의 종류와 정수를 정함(안 제16조) - 이사장 1인 - 상임이사 1인 - 이사 15인 이내 - 감사 2인 · 상임이사와 선임직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8조) · 이사회 의결사항을 정함(안 제23조) ·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함(안 제33조)	문화예술과	사회복지

제11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 요약서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관부서	소 관 위원회
6	성남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관한의 견청취안	☐ 제안이유 · 2016년 목표로 수립된 성남도시기본계획을 지역 내외의 여건변화와 삶의 질 향상 및 여가선용에 대한 시민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· 인구증가에 따른 도시 공간구조의 변화욕구에 부응과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확충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우리시 장기적인 도시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☐ 주요골자 · 목표년도 : 2020년 · 인구수용계획 : 120만명 · 계획구역의 면적 : 141.72km² · 주요내용 - 시가화 예정용지 (여수동 행정타운, 대장동 전원주택단지, 둔전 신시가지) - 공원확장 및 신설 (맹산, 대왕저수지, 남한산성유원지, 탄천변, 남서울묘지) - 유원지 신설 (율동 종합레포츠 영상단지) - 체육시설 신설(금곡동) - 기능대학 이전(금곡동)	도 시 과	도시건설
7	성남시지하수수질 검사수수료조례 중개정조례안	☐ 제안이유 · 환경부의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개정으로 수질검사항목 중 일부가 폐지 또는 신설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	정 수 과	경제환경

제11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 요약서

연 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관부서	소 관 위원회
8	성남시폐기물처리 시설설치촉진및주변 지역지원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	□ 주요골자 · 수질검사항목 중 신설된 6개항목과 기존 2개항목의 수수료를 국립보건환경연구원의 수수료기준에 맞도록 조정함(안 제4조) · 관련법 개정 등으로 수질검사항목이 신설되거나 수수료가 변경될 경우에는 “국립보건환경연구원 시험의뢰규칙”에서 규정한 시험수수료금액표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토록 함(안 제4조) □ 제안이유 · 상위법령개정에 따라 주민감시요원의 거주기간을 조정하고 · 2009년까지 주민지원기금 조성기준을 현행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(16,320원)에서 소각처리비 톤당 처리단가(40,167원)로 상향 조정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□ 주요골자 · 주민감시요원의 거주기준을 간접영향권역에 3년 이상 거주에서 2년이상 거주로 변경함(안 제2조) · 기금관리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성남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함(안 제6조) ·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당해연도 예산편성지침의 환경감시원 인부임 단가를 적용하도록 함(안 제7조)	자원관리과	경제 환경